

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12. 6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1월 20일,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(2017년 12월 6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선희

가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, 마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제2항 제2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규정 신설
 - 제1호 : 기금운용계획 ⇒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 - 제2호 : 결산보고 ⇒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
-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 연장 및 종기일을 조례안에 명시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
-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른 맞춤법,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조례안은

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, 마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○ 검토의견으로는

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한 취지에 맞도록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,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내용을 추가변경하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